

소 장

원 고 1. 김 0 0(000)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2. •] 0 0(000)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 \Box \Box Δ Δ Δ Δ Δ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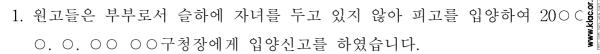
입양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20〇〇. 〇. 〇. 〇〇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- 2. 그런데. 원고들은 입양 당시 피고가 신체적,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으나 20○○. ○. ○. 피고의 친척을 통하여 피고가 3년전부터 정신분열증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, 2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건전한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, 이 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입양 당시에 알았더라면 도저히 입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	1통
1. 입양관계증명서	1통
1. 주민등록등본	1통
1. 소장부본	1통
1. 납부서	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1. 김 ○ ○ (인) 2. 이 ㅇ ㅇ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	or!
제출법원	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
제기권자	 미성년자: 양부모, 양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·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: 동의권자 ·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: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·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: 배우자 ·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: 양친자의 타방 ·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: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
상 대 방	·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,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 규
불복절차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및 기간	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비 용	・인지액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
입양취소 사 유	1. 입양이 제866조,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, 제873조제1항, 제874조를 위반한 때 2.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

※(1) 제 척 기 간

- 1.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
- 2.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
- 3.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
- 4.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
- 5.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
- 6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.